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12

발의연월일: 2021. 1. 28.

발 의 자: 강민국·박성민·한무경

서일준 · 정동만 · 김영식

권명호·서병수·이 영

허은아 • 양금희 • 윤창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임.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최근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하는 제도로,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임.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출생의 통보 및 확인) ①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은(「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녀의 성별
-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② 출생증명서를 제출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통보의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 정 안 제46조의2(출생의 통보 및 확인) ①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자녀의 성별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3. 부모(부를 알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② 출생증명서를 제출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
	<u> 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